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 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164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.

발의자 : 장제원 · 여상규 · 김경진  
원유철 · 이채익 · 김영우  
김현아 · 박덕흠 · 박성중  
유재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,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15호).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 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5호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
률」”을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
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 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)	----- ----- -----
16. ~ 27. (생 략)	16. ~ 2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